포괄한도거래약정서 (기업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거래조건 ~ 제 2조 거래기간 <기재 생략>	**제1조 거래조건 ~ 제 2조 거래기간** <현행과 동일>	
제3조 이자율의 변동 ① <기재 생략>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6 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기재 생략> 가. <기재 생략> 나.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다. ~ 라. <기재 생략> ② <기재 생략> <내용 신설>	**제3조 이자율의 변동** ① <현행과 동일>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3년물, 5년물),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삭제>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다. ~ 라.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은행 내부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은행이 각 기간별 대표금리로 정한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자금별 특성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을 가감하여 정한 내부이전가격(FTP)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④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수신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이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3개월 금융채 추가 및 내규 반영 - 문구 삭제 - FTP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 - 금리연동형 수신상품 담보대출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

<table>
<tr>
<td>

제4조 중도상환해약금 ~ 제9조 지급보증에 대한 약정

<기재 생략>

<내용 신설>

</td>
<td>

제4조 중도상환해약금 ~ 제9조 지급보증에 대한 약정

<현행과 동일>

제10조 한도약정수수료

① 본인은 한도거래 여신 또는 외화대출을 약정할 때 여신과목별 한도약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여신과목에 대해 제11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table>
<tr><th>여신과목</th><th>한도약정수수료</th></tr>
<tr><td></td><td>□ 여신한도 약정금액 × ( )% × 약정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td></tr>
<tr><td></td><td>□ 여신한도 약정금액 × ( )% × 약정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td></tr>
<tr><td></td><td>□ 여신한도 약정금액 × ( )% × 약정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은 360일)</td></tr>
</table>

② 제1조의 한도금액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 약정금액에 대하여 한도증액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일수에 대하여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td>
<td>

- 여신거래추가약정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용) 내용 삽입

</td>
</tr>
</table>

<table>
<tr>
<td>

제10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본인은 한도거래 여신 또는 외화대출의 경우 여신과목별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여신과목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윤년은366, 외화대출은 360)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윤년은366, 외화대출은 360)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윤년은366, 외화대출은 360)

② <기재 생략>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1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환통화 및 환율 ~ 제16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 생략>

</td>
<td>

제11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본인은 한도거래 여신 또는 외화대출의 경우 여신과목별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여신과목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일(윤년은366일, 외화대출은 360일)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일(윤년은366일, 외화대출은 360일)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일(윤년은366일, 외화대출은 360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대출은 결산일 익일, 약정해지일 및 기한연장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1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일, 한도 기한연장일 및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상환통화 및 환율 ~ 제17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동일>

</td>
<td>

- 번호 체하

- 표기 정정

-징구시점 추가

- 번호 체하

</td>
</tr>
</table>

※ 시행일자: 2017.06.12일

※ 기거래 고객에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